

동대문구 한천로 버스정류장 신설요청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청 원 자 : 이경수(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37길 33) 외 170명

나. 소개의원 :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다. 제출일자 : 2021. 2. 16.

라. 회부일자 : 2021. 4. 6.

2. 청원요지

-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소재한 래미안 엘파인아파트(한천로37길 33, 472세대 규모) 주민들이 한천로 165 앞에 정류소 신설을 요청하였으나
-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실시된 설문조사를 근거로 주민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설문조사 내용 및 대상을 재검토하여 조속히 버스정류장을 설치하고자함

3. 소개의원 요지

- 관할 경찰서의 정류소 설치 동의 의견과 아파트 주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원 해결에 진전이 없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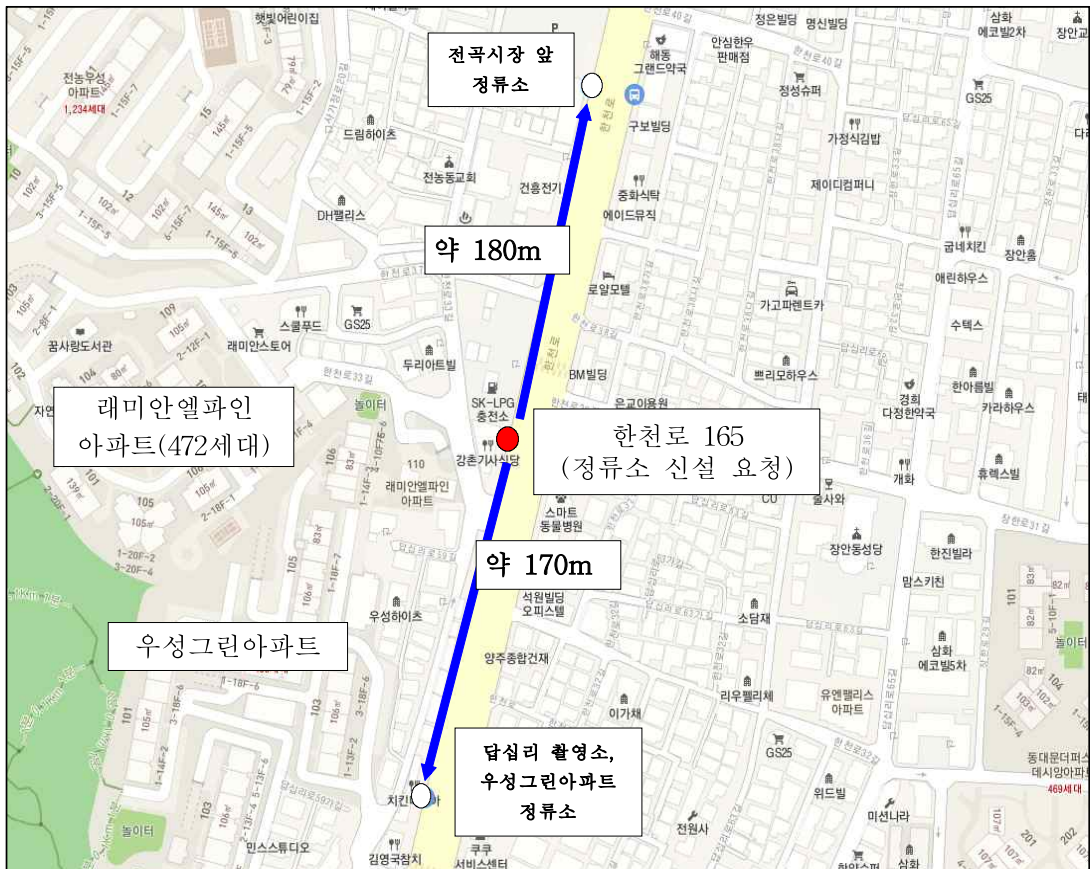
- 제출의견 : 보류
 - 정류소 신설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에서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자치구에서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정류소 신설 검토 보류
 - 구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타당성에 대한 논란(조사방식, 대상 등)이 있어 자치구에 주민의견 재수렴 요청
 - 정류소 신설 반대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류소 신설 시 주민 간 갈등 심화 및 반대측의 행정청에 대한 지속적 민원 제기 우려

1) 버스정책과-11769호(2021.4.14.)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청원은 동대문구 래미안 엘파인아파트 주민들이 동대문구 한천로 165(강촌기사식당 앞) 주변에 버스정류소2)를 신설하여 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접근성 및 시민이용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



- 2) 동 청원에서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정류장”으로 표기하였으나, 본 검토의견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정류소”로 표기함

나. 검토의견

■ 도로 및 교통여건 현황

- 정류소 설치를 요청한 한천로 165 주변 도로는 총 5개 차로로 상행(촬영소 사거리→배봉초교 사거리) 편도 2차로, 하행(배봉초교 사거리→촬영소 사거리) 편도 3차로인 보조간선도로³⁾이고, 주변에 택시 이용이 잦은 LPG 충전소와 횡단보도를 포함한 교차로가 인접해 있음
- 또한 한천로 165 주변 정류소의 간격은 현재 약 340m로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전방 약 170m에 “답십리촬영소, 우성그린아파트” 정류소가, 후방 약 180m에 “전곡시장앞” 정류소가 위치해 있고,

각 정류소의 일일 평균 이용객⁴⁾은 각각 790명, 845명이며, 4개 노선(간선1, 지선2, 맞춤1)이 정착되고 있음

※ 참고 : 노선운영 현황

| 노 선 | 기종점 | 인가대수 | 운행횟수 (회) | 배차간격 (분) | 일평균 대당 이용객 |
|------------------|------------------|------|-------------|-------------|---------------|
| 145 | 번동~강남역 | 37 | 168 | 4~10 | 530 |
| 1218 | 수유역~답십리 | 18 | 110 | 8~14 | 477 |
| 2233 | 면목동~옥수동 | 19 | 86 | 10~15 | 580 |
| 8221 (맞춤, 평일) | 장안2동주민센터 ~답십리 | 5 | 3 | 8~13 | 141 |

3) 2021년 도로통계현황(2020.12.31. 기준) : 서울시 홈페이지

4) '21년 3월 교통카드 자료

■ 정류소 설치 관련

-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5조5)에서 ‘정류소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이하 지침)에서는 ‘정류소 전·후 간격 200m 이내 원칙적 설치 금지 등’을 포함하여 정류소 설치 제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참고 : 가로변 시내버스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17.10.)

< 버스정류소 설치 제한장소 >

- 전후 정류소간 간격이 300m 이내인 경우
 - 전후 정류소간 간격이 200m~300m 이내인 경우는 도로여건(종단선형), 보행여건, 수요 발생량 및 특성(교통약자 등), 버스운행특성(노선수, 배차 간격 등), 교통영향, 교차로 횡단, 보행권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 그러나, 전후 정류소간격이 200m 이내인 경우는 버스운행의 효율성, 정시성 및 경제성을 위하여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제5조(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정류소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류소 등의 설치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교통상황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2. 정류소 등은 시민에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일성 및 일관성을 갖도록 한다.
 3. 정류소 등의 설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고려한다.
 4. 시내버스정류소는 시민의 편의성 및 버스가 무리 없이 진출입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 5~6.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정류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도로의 종단경사구간 및 곡선구간 등으로 시거가 불량하여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
- 교차로 정지선으로부터 30~50m 이내인 곳(설계속도 고려)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터널 안 및 다리 위 (부득이하여 설치할 경우 정차로를 본선과 분리하여 정류소 설치하도록 한다.)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3m 이내의 곳
- 소화전 또는 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3m 이내의 곳
- 도로공사구간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인 곳
- 이면도로 및 건물 진출입로 입구
- 승강장 및 보도의 폭원 1.5m 미만인 곳(부득이하여 설치할 경우 폭원 1.5m, 길이 7.0m 이상의 승강장을 확보한 후 정류소 설치하도록 한다.)

○ 동 청원에 따라 정류소를 설치할 경우 전후 정류소 간격이 200m 이내가 되어 지침의 규정사항을 충족하지는 못하나 청원 대상지가 포함된 답십리동의 경우 시내버스 정류소 중 여러 곳의 정류소가 200m 이내의 간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⁶⁾임을 감안할 때 버스정류소 설치시 행정동의 지역 특성, 교차로 정지선과 정류소간 거리, 이면도로 및 건물 진출입로 입구 등의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동 청원과 관련하여 동대문 경찰서 의견조회 결과⁷⁾ ‘버스정류

6) 답십리래미안위브아파트(06-222) → 답십리종합상가(06-224) : 약170m

답십리종합상가(06-224) → 답십리2동두산아파트(06-225) : 약160m

한양아파트.청솔우성아파트후문(06-226) → 청솔우성아파트.답십리시장(06-194) : 약190m

동담한신.대림아파트동대문체육관(06-229) → 촬영소사거리.동담초등학교(06-230) : 약130m

장 거리가 다소 짧으나, 한천로 차량통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버스정류소 신설이 수용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한천로 165 주변 정류소 설치시 직접적으로 주변아파트 472세대 및 교통약자의 버스정류소 접근거리가 짧아져 대중교통 이용편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대상지 주변의 특성상 LPG충전소를 이용하는 택시통행이 많음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충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정류소 신설에 대해 주민들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주민들에 대한 면밀한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불편사항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임

7)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과 - 9198호('20.9.7.) : 버스정류소 신설 요청에 대한 의견 회신

- 의견 : 수용 가능함

- 사유 : 양방향 버스정류장 거리가 다소 짧으나, 버스 통행량(간선1, 지선3)이 많지 않고 한천로 차량통행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등 주민들의 고충 의견을 적극 반영